
특정과제조사 결과보고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특정과제조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운영의 적정성 및 능률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직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2

개 요

- 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장) 제2항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17조(원장) 제2항
 - 직제규정 제9조(업무분장) 제8항 제14호
 - 위임전결규정 제12조(특명직무)
- 대상 부서 : 시설관리팀, 경리팀 등 조사필요 부서
- 종류 및 실시방법 : 특정과제조사(실지조사)
- 조사기간 : '11. 1. 17 ~ '11. 1. 21(5일간)
- 조 사 반 : 1개팀 2명(반장 : 기획예산팀장, 담당 : 김대인)

◆ 특명직무 수행 : 독립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원장에게 우선 보고

3

중점 조사사항

- 승강기 교체공사 관련 계약분야 등 전반

4

조사결과

○ 현황분석

구 분	침대용	승객용
수 량	4대(1, 2, 5, 6호기)	2대(3, 4호기)
계 약 명	침대용 승강기 교체공사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방법	조달청 제한(총액)	수의계약
도 급 자	(주) 영진엘리베이터	(주) 영진엘리베이터
계약금액	금248,017,000원	금50,009,000원
계 약 일	2010년 07월05일	2010년 11월 01일
납품기한	당초 : 2010년 10월 03일 변경 : 2010년 11월 20일	2010년 12월 24일
착 수 일	2010년 08월 12일	2010년 11월 13일
납 품 일	2010년 11월 16일	2010년 11월 26일
준공계 제출	2010년 11월 16일	2010년 11월 29일
준공(납품)검사	2010년 11월 16일	2010년 12월 23일
납품 후 고장발생	4회 (1호기 2회, 5호기 2회)	1회 (4호기 1회)

○ 조사결과

1. 침대용 및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주요부품 등 현장실사

[조사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승강기 고장원인 규명 및 기기상태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기술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소요예산 : 1기당 250~300만원 정도

[소관부서 의견]

- “없음”

2. 침대용 승강기 교체공사 납품기한 연장

[조사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환자민원 발생 및 공사협의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으로 납품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최종 변경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소관부서 의견]

- “없음”

3. 침대용 및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조사결과]

1. 침대용 및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자 미 지정

- 침대용 승강기 교체공사 일반시방서 2-2)(공사감리), 8-가(공장검수), 8-나(법정검사)와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일반시방서 2-2)(공사감리), 8-가(공장검수), 8-나(법정검사)에 의거 제작단계에서 설치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승강기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시설관리팀에서는 현황과 같이 감리자를 미 지정하여 공사감리 및 공장검수 대행, 법정검사 입회를 소홀히 하였음.

2.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물품검사 기한 미 준수

- 행정안전부 예규 제181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VIII-1 (물품의 검사)에 의거 계약이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대상자 입회하에 납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시설관리팀에서는 현황과 같이 2010년 11월 29일에 준공계를 제출받고도 준공(납품)검사는 2010년 12월 23일에 실시하여 10일이 더 경과되었음.

[소관부서 의견]

1. 침대용 및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자 미 지정

- 침대용 승강기 교체공사 일반시방서상에 표기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승강기 교체 및 리모델링 시 감리자 지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승강기 교체관련 하여 승강기 교체 및 리모델링 완료 후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완성.수시법정검사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검사 하기 때문에 시방서상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 검사합격으로 감리를 수행 한 것으로 판단함.

2.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물품검사 기한 미 준수

- 침대용 및 승객용 승강기의 운행 중 진동 및 소음발생과 설치오류로 인한 운행중지 등이 발생되어 이와 관련한 미비점 보완 및 지시사항을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함.

4. 침대용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내용(시방서) 변경사항 통보 소홀

[조사결과]

- 행정안전부 예규 제181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VI-1 (수량조절)에 의거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황에서와 같이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을 조달청에 통보 하여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소관부서 의견]

- 침대용 승강기 교체공사 조달계약 완료 후 계약업체(영진엘리베이터)의 현장실사 후 권상기 부분이 시방서와 현장여건이 일치하지 않아 권상기 타입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규격변경 관련 사항을 협의하던 과정 중 침대용 승강기 교체공사 발주 후 잔여사업비 약 5천만으로 3,4호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던 중 잔여사업비 5천만으로 승객용 승강기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침대용 승강기 규격변경(레일 및 완충기 등)을 통해 남는 비용으로 승객용 승강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현장실사를 시행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에 충족하는 승강기 자재중 레일 및 완충기, 토가드 및 승장추락방지판 등을 재사용하여 이로 인한 증감내역을 영진엘리베이터에서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기에, 이에 담당자가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하여 규격변경을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규격변경관련 사항을 계약부서에 통보해야 하였으나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하여 규격변경승인 공문을 계약부서에 통보하지 못하였음.